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205099 판결 [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금청구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변 론 종 결 2024. 9. 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E는 60,000,000원 및 그중 15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4. 4. 20.부터,
3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4. 6. 1.부터, 15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4. 6. 15.부터 각
2024. 10. 1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고,

나. 피고 B, C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
15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4. 6. 1.부터, 피고 C은 2024. 6. 15.부터 각 2024.
10. 1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
지급하고,

다. 피고 D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4. 20.부터 2024. 10. 1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3. 30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 E는 피고 B, C, D와 연대하여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1. 2. 1. 망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로부터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건물 지층 H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를 매매대금 170,0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망인에게 계약금 3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(제13항은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서명이 되어 있다).

9. 본 계약은 현 매도인 I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I의 처 F로 상속등기를 한 후 A 앞

으로 등기이전하는 조건의 계약임

10. 본 계약 시 삼천만 원을 지불하고, 3월 말까지 매수자에게 등기이전하는 조건임. 단,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이 안 될 시는 삼천만 원에 대한 배액배상을 하기로 한다.

13. 위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F의 아들 E(주민등록번호)가 연대책임지기로 한다.

나. 원고는 2021. 3. 31.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.

다. 망인은 2022. 9. 8. 사망하였고,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데, 그중 피고 B, C은 2022. 12. 2.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3. 8. 3.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(서울가정법원 2022느단56887호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 1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망인과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0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인 각 15,000,000원(= 60,000,000원 × 1/4)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, 피고 B,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. 한편 원고는 2021. 3. 30.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,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의 변제기를 정한바 없고,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.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분1) 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에게, 피고 B,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와 연대하여 각 15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4. 6. 1.부터, 피고 C은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4. 6. 15.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. 10. 17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, 피고 D는 피고 E와 연대하여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4.

4. 20.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. 10. 17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, 피고 E는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4. 6. 1.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. 10. 17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및 피고 B, C, D의 위 각 채무를 위 각 피고들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소진

1)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분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같은 날 송달받았다.